

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(5일)
동업기업	① 법인명(조합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사업장(조합) 소재지 (전화번호:)		
	⑥ 업태	⑦ 종목	

법인의 구분												
⑧ 합명 회사	⑨ 합자 회사	⑩ 법무 법인 법무 조합	⑪ 특허 법인	⑫ 노무 법인	⑬ 법무 사합동 법인	⑭ 법무 법인 (유한)	⑮ 회계 법인	⑯ 세무 법인	⑰ 관세 법인	⑱ 조합	⑲ 익명 조합	⑳ 합자 조합

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동업기업의 설립일	년 월 일
-----------	-------

동업자 명세							
㉑ 번호	㉒ 성명 (법인명)	㉓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㉔ 주소(소재지)	㉕ 전화번호	㉖ 지분율(%)	㉗ 동업자군 구분	㉘ 동업자 구분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외국단체는 적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. 1. 설립등록증 등 외국단체의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.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법인(조합)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2.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(조합)은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3.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(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합니다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4. 동업자명세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, "㉔ 동업자군구분"란에는 거주자는 "1", 비거주자는 "2", 내국법인은 "3", 외국법인은 "4"로 적고, "㉕ 동업자구분"란에는 능동적동업자는 "가" 수동적동업자는 "나"로 적습니다.